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 p.69 ></p> <p>2. 선정평가</p> <p>가. 추진절차, 공모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공고)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 중간생략 > (과제신청)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안내서 해당사업(과제)의 신청자격, 과제구성 요건 등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전산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등을 실시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을 실시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전에 각 해당구성기관은 사전에 필수적으로 온라인 체크를 해야 함 <p>전문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평가단 구성) 해당사업(과제) 질환 및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 후보로 추출하고,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섭외함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소형</th> <th>중형 및 대형</th> <th>연합형</th> </tr> </thead> <tbody> <tr> <td>5명 내외</td> <td>8명 내외</td> <td>10명 내외</td> </tr> <tr> <td>2억원 미만</td> <td>2억원~20억원 미만</td> <td>2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소형	중형 및 대형	연합형	5명 내외	8명 내외	10명 내외	2억원 미만	2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p>< p.67 ></p> <p>2. 선정평가</p> <p>가. 추진절차, 공모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공고)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 중간생략 > (과제신청)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안내서 및 해당사업(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신청자격, 과제구성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입력 및 계획서, 첨부서류 업로드 등을 완료한 이후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승인(기관 인증)을 실시해야 함 <p>전문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해당사업(과제) 질환 및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 후보로 추출하고,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하여 평가위원을 섭외함 <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소형 및 중형</th> <th>대형 및 연합형</th> </tr> </thead> <tbody> <tr> <td>5명 내외</td> <td>8명 내외</td> </tr> <tr> <td>10억원 미만</td> <td>1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5명 내외	8명 내외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부터 과기부가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HTdream → IRIS) 용어 및 평가위원 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대상을 평가위원으로 명확화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과제 규모별 적정 선정평가위원 수로 조정 <p>* 연구재단: 5~7명, 산기평: 7명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통일(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소형	중형 및 대형	연합형															
5명 내외	8명 내외	10명 내외															
2억원 미만	2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5명 내외	8명 내외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 실시) 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를 대상으로 RFP부합성, 중복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총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위원장이 개별평가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p>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우선지원 순위,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를 대상으로 RFP 부합성, 중복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위원장이 개별 평가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p>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시설·장비 검토 및 심의대상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로 명확화 ○ 문구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순위 → 지원 우선순위 - 연구비 → 연구개발비
<p>< p.70 ></p> <p>전문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계획, 진행과정의 적절성, 과제평가단 구성(전문성)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함 <p>평가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 예비선정대상과제의 기본정보를 10일 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Htdream.kr)에 공개함 - 신청과제의 과제평가단 종합평가의견은 예비선정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연구책임자가 열람가능 	<p>< p.68 ></p> <p>전문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계획, 진행과정의 적절성,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전문성)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함 <p>선정과제 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 평가결과 통보를 위해 신청과제의 선정 여부 및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의견은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협약승인을 받아 <지원확정 대상 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문위원회 분류기준과 일치 - 용어 통일(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혁신법 및 IRIS에 따라 예비선정공고 절차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 후 선정과제 확정으로 조정 - 그에 따른 후속 절차(결과 공개, 협약 안내 등)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이의신청 및 중복성 접수·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선정공고 기간(10일)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접수 받고, 예비선정공고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및 중복성이 제기된 과제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후 이의신청 수용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함 <p>최종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이 확정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협약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고 <지원확정 대상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p>※ 지정사업(과제)은 별도의 접수 및 선정평가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과제협약 승인 요청 및 통보 후 최종 확정하여 협약을 진행함</p>	<p>이의신청 접수·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으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과제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후 이의신청 수용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함 <p>< 이 동 ></p> <p>※ 지정사업(과제)은 별도의 접수 및 선정평가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과제협약 승인 요청 및 통보 후 확정하여 협약을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선정공고 절차를 폐지하고, IRIS 기반 후속 절차(이의신청)로 수정 예비선정공고절차 폐지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 후 예비 선정 공고 없이 선정 확정으로 조정되어 기존 '최종확정' 관련 내용은 '선정과제 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P.68)로 이동 용어 통일 - 최종 확정 → 확정
<p>< p.72 ></p> <p>다. 평가방법 <선정평가 추진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결과심의 및 예비선정 과제확정 복지부 <전문위원회>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최종 선정과제 확정 복지부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신청)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p>< p.70 ></p> <p>다. 평가방법 <선정평가 추진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복지부 <전문위원회>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신청)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선정공고 절차 폐지로 인한 절차 수정 IRIS에 기반하여 변경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제안요청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신규과제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과제신청을 해야 함</p> <p>* 성차의학(Sex specific medicine) (비임상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시 남녀(성(sex)/젠더(gender))간의 병리 및 악리 기전, 질병 특성의 차이에 대한 임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 연구수행 시 체크리스트를 첨부서류로 제출</p> <p>- 해당 사업(과제)별 과제구성 요건, 연구책임자의 자격, 가감점 기준, 특기사항이 다르므로 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p> <p>-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과 서식(hwp)작성 및 업로드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뉨</p> <p>* 표지, 요약문, 적정성 검토,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 현황, 연구개발비, 성과목표 등</p> <p>**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서식, 첨부 제출서류 서식</p> <p>○ (사전검토 실시)</p> <p>- 주요 사전검토 탈락은 ① 공동연구개발과제 미구성(단, RFP상 공동연구개발과제 구성이 필수인 경우에 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번호 동일), ④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 ⑤ RFP별 연구책임자의 자격(ex. 임상의 등) 미충족 등으로 나타남</p>	<p>과제제안요청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IRIS 매뉴얼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u>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과제신청을 해야 함</u></p> <p>* 연구수행 시 <u>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등</u></p> <p>- 해당 사업(과제)별 과제구성 요건, 연구책임자의 자격, 가감점 기준, 특기사항이 다르므로 <u>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u></p> <p>- <u>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직접 온라인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hwp, hwpX 등)를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과제 신청을 완료함</u></p> <p>* 기본정보, 과제요약,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성과목표 등</p> <p>○ (사전검토 실시)</p> <p>- 주요 사전검토 탈락은 ① 공동연구개발과제 미구성(단, RFP상 공동연구개발과제 구성이 필수인 경우에 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법인번호 동일, ④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 ⑤ RFP별 연구책임자의 자격(ex. 임상의 등) 미충족 등으로 나타남</p>	<p>- HTDream에 따른 신규과제 신청 가이드라인 대신 IRIS 매뉴얼 사용</p> <p>- 용어 통일(제안요청서 → 과제제안요청서)</p> <p>* 첨부서류 목록 中 '성차의학 관련 체크리스트'는 취지에 맞게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로 명칭 변경</p> <p>○ 용어 통일 (제안요청서 → 과제제안요청서)</p> <p>○ IRIS에 기반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변경</p> <p>* 연구자가 온라인 상 과제 정보를 입력하면 업로드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과 합본하여 최종 연구개발계획서가 생성되기 때문에 '온라인 과제 정보'로 표현</p> <p>○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위탁연구개발기관까지 추가하여 동일기관 여부 확인</p>
<p>< p.73 ></p> <p>○ (평가 실시)</p> <p>- (과제평가단 구성) 과제평가단은 해</p>	<p>< p.71 ></p> <p>○ (평가 실시)</p> <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연구개</p>	<p>○ 오기 및 용어 수정</p> <p>- 용어 통일</p>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당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하고, 전공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u>전문성을 검증</u> 등을 실시함.</p> <p>< 중간생략 ></p> <p>- (평가위원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과제계획서, 발표자료 등)를 선정평가 3~5일 전 <u>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u>를 통해 공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p> <p>< 중간생략 ></p> <p>-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제 연구비 규모,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발표자료는 평가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발표평가 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직접 <u>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u>에 업로드 해야 함</p>	<p>발과제평가단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하고,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u>전문성 검증</u> 등을 실시함.</p> <p>< 중간생략 ></p> <p>- (평가위원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과제계획서, 발표자료 등)를 선정평가 3~5일 전 <u>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u>을 통해 공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p> <p>< 중간생략 ></p> <p>-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제 연구비 규모,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발표자료는 평가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발표평가 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직접 <u>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u>에 업로드 해야 함</p>	<p>(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p> <p>- 시스템 변경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p>
<p>< p.75 ></p> <p><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및 방법 ></p> <p>4. 중복성 심의방법</p> <p>다.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중복성 의견은 연구책임자의 소명자료, NTIS 검토 결과, 과제평가단 및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함 (단, 선정평가시 동일한 <u>건으로 중복성이 소명된 경우에는 반려</u>할 수 있음)</p>	<p>< p.73 ></p> <p><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및 방법 ></p> <p>4. 중복성 심의방법</p> <p>다. < 삭제 ></p>	<p>○ 예비선정공고 절차 폐지로 관련 내용 삭제</p>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심의 및 예비선정과제 확정)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예비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함 - (예비선정공고) 전문기관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예비선정대상과제의 기본정보를 10일 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은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확인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접수받고, 접수사항을 반영한 예비선정공고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p>< p.7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협약승인 통보를 근거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연구개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지원확정 대상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 (선정결과 공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위해 선정 여부 및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의견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공개 이후 10일 이내에 필수 첨부서류 보완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초과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연구책임자의 선정포기가 발생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 결격사항 또는 포기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p>< p.74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협약승인 통보를 근거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선정공고 절차 폐지로 관련 내용 삭제 ○ '23년 가이드라인의 '최종선정 과제확정(P76) 부분의 내용 이동 ○ 예비선정공고 절차 폐지로 인한 후속 절차 수정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첨부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p>	<p>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p> <p>*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함</p>	<p>하도록 함</p>																		
<p>< p.77 ></p> <p>라. Q&A Q5. 과제 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신청 마감(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신청완료 이후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담당자(주관 연구개발기관) 권한으로 완료 취소 이후 수정이 가능하며, 과제신청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기관인증 마감 기간에는 기관인증을 제외한 신청완료 과제 수정은 불가능하오니, 과제신청 마감시간 까지 필수로 과제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p>	<p>< p.75 ></p> <p>라. Q&A Q5. 과제 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 신청 마감일(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하나,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IS 시스템 내 활용하는 용어 등에 기반하여 수정 - IRIS 시스템의 기술적인 사항은 제외 																		
<p>< p.81 ></p> <p>[붙임 3]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감점 항목</th> <th>적용대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td> <t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td> <td>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td> </tr> <tr> <td>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td> <td>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td> <td>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td> </tr> </tbody> </table>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 p.78 ></p> <p>[붙임 3]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감점 항목</th> <th>적용대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td> <t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td> <td>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td> </tr> <tr> <td>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td> <td>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td> <td>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td> </tr> </tbody> </table>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인용조문 수정 및 개정사항 반영 -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0.5점)' 추가 반영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현행			개정수요			사유
			수정안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가감점 항목	적용대상	비고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여성 과학자 육성 가점	< 생략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성 과학자 육성 가점	< 현행과 동일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중간생략 >			< 중간생략 >			
< 신 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증 가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p.82 >			< p.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의학 관련 체크리스트’는 성차의학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필수 작성하도록 작성범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명칭을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로 변경
<p>[붙임 4] <u>성차의학(Sex specific medicine) 관련 체크리스트</u></p> <p>성차의학 관련 체크리스트</p> <p>* 비임상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시 남녀(성/젠더(sex, gender))간의 병리 및 약리 기전, 질병 특성의 차이에 대한 임상 근거 확보를 하고자하는 연구에 해당 시 작성</p>			<p>[붙임 4]</p> <p>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p> <p>*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필수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합당한 근거 필수 작성)</p>			
< p.86 >			< p.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미적용에 따라 내용 삭제
<p>나. 협약 안내사항</p> <p><input type="checkbox"/>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금부담금 감면 연계 제도</p> <p>○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p>			<p>나. 협약 안내사항</p> <p>< 삭 제 ></p>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p> <p>○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 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p> <p>* 희망기관은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수정계획서에 반영</p>		
<p>< p.91~103 > 붙임 서식</p> <p>[붙임 1]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실적·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해당)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실적·계획서</p>	<p>< p.89 > 붙임 서식</p> <p>[붙임 1] < 삭제 ></p>	<p>○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미적용으로 [붙임 1] 서식 삭제</p>
<p>< p.137 ></p> <p>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p> <p>○ 평가등급</p> <p>- 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과제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와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합의하면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극히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p>	<p>< p.135 ></p> <p>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p> <p>○ 평가등급</p> <p>-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합의하면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극히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p>	<p>○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기 폐지되었으므로, 혁신법 관련 조문 인용</p> <p>-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각 호 →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p>
<p>< p.142 > 표</p> <p>6.4 최종평가</p> <p><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p> <p><표 생략></p>	<p>< p.140 > 표</p> <p>6.4 최종평가</p> <p><연간지원액 따른 과제 규모></p> <p><현행과 같음></p>	<p>○ 표 제목 오기 수정</p>
<p>< p.144 ></p> <p>④ 이의신청</p> <p>-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p>	<p>< p.142 ></p> <p>④ 이의신청</p> <p>-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p>	<p>○ 최종평가에 관한 조문이므로 선정평가 관련 문구 삭제</p>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p>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선정 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p>	<p>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p>					
<p>< p.224 ></p> <p>[별지 제4호 서식] 제재처분 사전통지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제출기한</td> <td>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td> </tr> </table>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p>< p.226 ></p> <p>[별지 제4호 서식] 제재처분 사전통지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제출기한</td> <td>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td> </tr> </table>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제3항 준용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